



#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

\*\*\*\*\*가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후 \*\*\*\*\*에서 패소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번호 : \*\*\*\*\*
2. 사 건 명 :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3.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 강남구청장, \*\*\*\*\*
4. 관할법원 : 대법원 \*\*\*\*
5. 소 가 : \*\*\*\*\*
6. 청구요지

원고는 HK저축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2005년 HK저축은행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강남구청장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2015.09.25..에 선고한 \*\*\*\*\* 원고전부패소에 따른 소송 결과를 전달받았으나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7. 우리구 의견 : **응소**

8. 응 소 사 유

가.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지방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소득세와 함께 부과지한다.

3)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것으로 본다.

나. 지방소득세의 부과는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인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면 지방소득세 부과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 건은 \*\*\*\*\*이 양도소득세 \*\*\*\*\*을 적법하게 부과처분 하였고, 이 양도 소득세액(과세표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의 부과처분도 적법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에 응소 하고자 합니다.

9. 소 송 담 당 자

- 지방세무주사 최종권
- 지방세무주사보 부경필

붙임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끝.

---

주무관                    **부경필**                    지방소득세4팀 **최종권**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12/03 **김용운**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 박도규**  
장

시행    세무2과-41860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742    /전송 02-3423-8818    / boopil@gangnam.go.kr    / 부분공개